

『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정곤 의원

2. 제안이유

- 2013. 12. 5.시행된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6조)
-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사항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,
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,
「지방재정법」,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부서의견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,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갈등 조정을 위해, 주민협의체 구성과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담조직,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